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0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바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섭

소송대리인 엄귀현

변 론 종 결 2022. 1. 13.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D 주식회사는 2015. 6. 16. C에게 2,230만 원을 이자 연 17.9%, 지연손해금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6. 5. 20. E 유한회사에게, E 유한회사는 2019. 6.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차례로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그 채권양도 무렵 C에게 통지되었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차전2153)하여 위 법원은 2020. 4. 8. ‘C은 원고에게 51,142,327원과 그중 22,3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6. 24.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아버지 F은 2019. 1. 2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G, H, C은 2019. 2. 22.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I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64. 8. 5. 망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을 비롯한 자녀 4명을 양육한 사실, 피고와 망 F은 1978. 5. 30. 망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하여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여 1996년 1월경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하였고, F은 최소한 2015년 전부터 분가하여 살았고 독립적인 직장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온 사실, 자녀들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초과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로서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한 것에 대해 보상받을 의사 혹은 배우자인 망 F이 먼저 사망함으로써 망 F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전 받을 의사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피고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가 선의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보원

별지